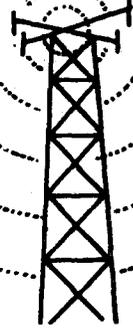


5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편집국장)

肝큰 양계인

며칠전 어느 일간신문에 요즈음 학생들간에 유행하는 우화가 소개된 적이 있다. 참새 세마리가 나란히 나뭇가지에 앉아있었다. 이것을 본 포수가 다가와 한마리를 겨냥 하였다. 그 겨냥을 받은 놈이 “겨냥할 줄 알았지” 하고 시큰둥 하게 뇌까렸고, 총소리가 나자 “쓸줄 알았지” 하고 총을 맞고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맞을 줄 알았지”하면서 숨겨갔다.

그후 남은 두 놈은 딴 나뭇가지에 옮겨앉아 다시 다가오는 포수를 배짱 좋게 보고만 있었다. 다시 총 소리가 나고 한마리가 맞아

떨어지면서 포수에게 불평을 했다. “재도 섰데 왜 나만 쏘지요?”

그러자 날아가던 놈이 “포수아저씨 재 아직 죽지 않았으니 한방 더 쏘세요”라고 말하고는 이번에도 배짱 좋게 가까운 나뭇가지에 옮겨 앉았다. 기가질린 포수는 다시 다가 가면서 이번에는 경고를 주기로 하였다. “쏜다. 쏜다”그러자 그 참새가 되받는 말이 “홍 누가 떨줄 알구?”

드디어 방아쇠가 당겨졌고, 그 남은 한마리도 죽고 말았다. 여기에서 그 포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놈들이 필경 보통 참새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배를 갈라 보았더니 모두 肝덩이가 부어 있었다는 이야기다.

지난 연말부터 양계업계에 찾아온 불경기는 이제 4개월을 계속 하고 있다.

“불황이 올줄 알았지”하고 시큰둥하게 뇌까리는 양계인 “부도가 날줄 알았지” “병아리를 땅에 묻을 줄 알았지” “종란을 식란으로 처분할 줄 알았지”하고 남의 일처럼 태연하게 말하는 양계인은 없는가? 불량추생산이 말썽이 될 때마다 “재도 섰데 왜 나만 쏘지

요?”라고 하는 양계인의 탈을 쓴 참새는 없는지? 어려움을 당하는 동업자를 “아직 안 죽었으니 한방 더 쓰세요”하는 생각을 가져본적은 없는지? 다 망한 후에 혼자 남기를 바라는 양계인은 물론 없으리라고 생각하나, 다른 양계업자의 부도에 관심을 두는 양계인도 없을까?

그간 그렇게 귀가 아프게 외쳐온 불경기가 예상되니 생산조절을 할것을 경고 하였음에도 “홍 누가 떨줄 알고”하며 뱃심종계 확장에만 힘써온 양계인.

정부의 닭고기 수매비축이 시작되어 값이 약간 상승할 기미만 보여도 다시 확장을 서두르는 양계인은 종소리가 멎기가 바쁘게 이웃 나무가지에서 버티는 참새와 다를것이 없다고 보겠다.



지난 몇년간의 호황이 간 큰 양계인을 대량 생산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는지? 4개월의 불황에도 해결을 위한 뚜렷한 업자 공동의 협의 결정이 없는것은 무슨 이유일까?

참새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총에 맞아 죽기까지 버티기 보다는 살아남을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어떨까?

간이 크다고 반드시 좋은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鷄產物 가공제품 개발 서둘러야

보도에 의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식물성 고영양 경제식품을 개발, 국민종합영양사업을 위한 시범공장을 건설키로 하였다고 한다. KIST 곡류공학연구실 연구팀(실장 崔弘植)에 의해 개발된 이식품은 어린이 임신수유부 노약자 등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균형있게 함유되었고 생산비는 동물성식품에 비해 50~60%가 저렴 하다고 한다. 최근 섬유산업의 제조·기술을 응용하여 대두박의 단백질을 고기와 똑같이 織造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대두박으로 가느다란 섬유를 뽑아내어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와 똑같은 섬유조직으로 직조하는 것이다.

얼마전 국내 모회사가 대두단백을 소세지 등 축산물 가공업체에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

도 있었다. 미국에서 계란소비 위축의 주원인이 코레스테롤 보다는 각종 식물성 인스턴트 식품의 개발에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계란및 닭고기는 거의 전부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어 복잡한 사회생활과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에게 닭고기와 계란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KIST에 축산물가공연구실이 설립되고 이 유방 실장이 본지에 계속 투고를 하여주고 있으나 업계에서 아직 이렇다할 협조나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한 노력이 없는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는 흔히 닭고기가 영양가 많고 값이싸다는 것을 소비자에 인식시키려고 노력할 때가 많다. 물론 값이 싸것도 중요하지만 값싼 식품이 반드시 잘 팔린다고 단언 할수는 없다. 명동이나 일류 백화점에서 꼭 같은 제품을 여러가지 가격을 붙여 판매해본 결과 가장 비싼 값을 붙인것이 가장 많이 팔리더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식료품의 경우 지나치게 값싸고 영양가가 많음을 강조하다 보면, 일반 소비자는 가난한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 인식되어지기가 쉽게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식사 때마다 자기들이 가난한 위치에 있음을 재확인 해야 한다는것은 피로운 것이며 이런 이유로 반발을 사서 잘 팔리지 않게된다. 지난번 본지 편집위원이 주간중앙에 닭고기 소비를 위한 광고에 만사위가 오시면 잡아주던 귀한식품임을 강조한 것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배부른 식품보다는 맛이있는 식품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닭고기는 백숙 아니면 닭찜, 계란은 삶든가 후라이

라는 인식은 소비를 위축시킬 뿐이다. 새로운 더좋은 닭고기 계란 제품을 개발하여 닭고기는 귀한 식품이며 맛이 있고 먹기 쉬운 식품임을 소비자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우유가 고급의 아이스크림과 요구르트를 개발 하여 크게 소비가 신장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제품개발이 투자하는 것은 소비확대를 위한 재투자임을 알고 개인이 어려울 경우 공동으로라도 기금을 조성할 것을 바란다.



메추리 붐
연상시키는
칠면조 붐

최근 신문에 칠면조 분양에 대한 광고가 많
아지자 협회로도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고있다.
칠면조는 멕시코및 미국 남부에 야생하고 있
던 것이 가축화 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해방후
에 수입되어 70년대 초반까지 약 2천여수가
사육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도 잘 번하는 짐승이라...

금년부터 자동승인 품목으로 됨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많이 수입되어 일간지에 광고
가 되고 있다.

과거 칠면조 사육수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은 흑두병등 질병과 일반 수요가 극히 한정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슈퍼마켓 등을 통하여 판매된다고 하나
소비가 얼마나 신장될지는 극히 의문 스럽다.
최근 사회풍조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허황된 생
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 이들이 과거 증권이나
부동산 메추리 매와 같이 과대 붐을 조성할 경
우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생가지 않을까도 우
려된다.

아무튼 농업에는 투기나 기적이 없으며, 일시
적인 붐을 조성하거나 편승하는 행위는 진정한
축산인으로 볼 수는 없겠다.

생산자 희생위에
도계유통 이루어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5월1일 부터 서울시 중구 종로구및 아파
트지역에는 허가된 도계장에서 도계한후 검
사를 받은 닭만이 유통되게 되었다. 본지 2
월호(33p)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금년 2월1
일부터 시행이나 서울시의 세부시행 계획
에 의거 그간 3개월의 계몽기간이 (지도교
육)있었으므로 실제 위반자에 대한 지도 단
속은 5월1일 부터 시행하게 된다.

76년의 재판을 우려하여 그간 축산물가공

처리법 모범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실시되는 도계유통이 이번에는 꼭 성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만은 꼭 성공하여야 하겠기에 다음 몇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관이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관계 모든업자가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여 해결하여 나가야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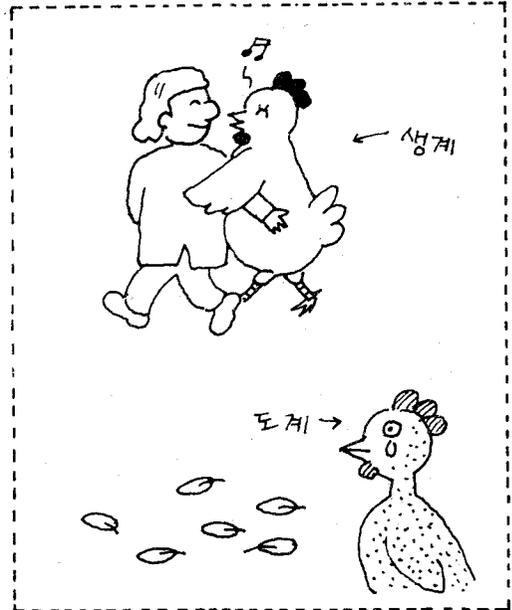
첫째, 우리가 큰 기대를 걸었던 간이도계장이 한건도 허가되지 않은 점이다.

76년도 실패 이유중의 하나가 도계장 처리능력의 부족이었던 점을 생각할때, 아무리 서울시 전역이 아니고 중구 종로구 및 아파트 지역에 적용지역이 국한 되었다고는 하나, 76년에 비하여 소비량이 배에 이르고 있으며 중구 종로구는 요식업소가 집중되어 있다. 76년에 비하여 일반도계장의 처리능력도 별로 향상되지 않은 현재 처리능력과 수요량의 정확한 재검토와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없이 단속 일변도일 경우 불경기에 허덕이는 생산자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간이도계장이 설치 희망업자가 많음에도 건축법상의 제약 때문에 서울시내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법은 시행되게 되어 불안한 양계업자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다. 간이도계장은 법시행 적용지역 외에도 생산단지과 가까운 장소에 허가하여 주는 방법도 연구되어야 되겠다.

둘째로, 76년도에도 지적되었듯이 닭고기의 유통혁명을 단순한 닭고기의 위생처리에 관한 법률로 실시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닭고기의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형태로 도계장에서만 위생처리 된다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은 76년도 경험 하였으므로 금년에 다시한번 시험하여 볼 필요는 없다.

소비자의 인식구조가 아직도 대부분 생계를 원하고 있으며(축산진흥회 조사부에서 취



근조사101p참조) 유통을 담당하는 기구도 종래의 생계상 서울계육공판(주) 일반 식육판매업소 등으로 복잡하여 졌고 76년에 비하여 생산자수도 급증하여 도계유통혁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희생 없이는 어렵게 되어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희생의 대상이 76년도와 같이 생산자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셋째, 우리나라의 닭고기 수요가 계절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고 같은 생활권에 있는 같은 서울시내에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도계품과 생계가 공존될 경우를 생각해서 일반 도계장에 대한 각종 지원도 뒤따라야 되겠다.

4 개월 불황에 허덕이다 이제 막 새싹이 움트는 육계업계에 이번의 조치가 사나운 비바람이 되지않기를 바란다.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계유통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희생되는 도계유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같이 혼신의 노력을 하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닭고기 값은
떨어져도
소득표준율은 요지부동

1978년도 소득표준율이 확정 발표되었다. 제 2의 세월이라고 하는 소득표준율의 높고 낮음이 직접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므로 매년 전 양계인의 지대한 관심이 되고 있다.

소득표준율의 낮은 율과 높은 율의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본지 78년 5월호 29p를 참고 하시면 되겠다.

우리 업계의 현실정도로 볼 때 대부분의 양계업자가 기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또 기장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이 있어도 양계산물을 판매하는 제반 과정이 영수증을 주고 받는 풍토가 조성되기까지는 어려운 실정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소득표준율은 바로 세월이며 양계업과 같이 소득중 일부를 세금으로 적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에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많은 업자가 50% 감면 혜택기간도 끝나나 전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계산업이 전업 기업화됨에 따라 소득에 비하여 외형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기장의 무자가 되어 사실상 소득표준율은 관계가 없을 것 같으나 위에서 말한 것같이 현 양계산

물 유통구조가 기장이 어렵게 되어있어 개인 간이장부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율에 30%를 가산하여 적용받게 되며 개인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는 50%를 적용받게 되어 양계산업의 기업화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도 되고있다.

앞으로 양계업의 소득표준율에 대하여는 좀더 자체연구를 하여 현실화 되도록 관계기관과 꾸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
짐이 무겁다.
▽



1978년도 소득표준율(기본율)

一連 番號	種 目	區 分	코드 番號	78년 基本率	準用種目	適 用 範 圍
10	酪農 및 肉牛飼育		CX 0100	10		○牛乳 및 牛乳製品을 生産하기 爲하여 젓소 및 젓羊을 기르는 酪農業 (酪農事業체에서 牛乳를 殺菌하여 瓶에 넣어 市販하는 境遇 包含)과 쇠고기를 生産하기 爲한 肥肉牛 飼育業
11	養 豚		CX 0200	14		○돼지고기를 生産하기 爲한 돼지 飼育業
12	養 豚		CX 0300	18		○꿀을 生産하기 爲하여 꿀벌을 치는 업
13	其他家畜 및 家禽飼育		CX 0900	12.5		○젓소, 젓羊, 肥肉牛, 돼지를 除外하고 고기, 毛皮털 등을 生産하기 위한 家畜飼育業 ○고기와 알을 生産하기 爲하여 닭, 오리, 거위, 七面鳥 등을 飼育하는 家禽飼育業 ○누에를 치는 養蠶業 ○其他의 畜産活動으로서 種畜, 種禽飼育場, 愛玩用 動物飼育, 野生鳥獸類飼育長(狩獵用 除外) 實驗用飼育場 包含 ○畜産法에 依하여 登錄된 부화業者가 營爲하는 가금부화업
50	配合飼料都賣業		HA 1000	4.5		
142	穀 物	쌀	KA 0101	2		政府放出米包含
143	家 畜		KA 0200	3		家畜 및 家禽
144	고 기	고기부산물	KA 0301	3.5		食肉副産物
		고 기	KA 0302	4		소, 돼지, 닭 등의 食肉
156	계 란		KA 1500	3		
164	飼 料		KA 2300	5	米糠 油粕 雜粕	
179	醫 藥 品	漢 藥	KD 0101	8		
		洋 藥	KD 0102	5		
182	肥料 및 農藥	農 藥	KD 0402	5		殺虫劑, 殺菌劑, 消毒劑의 農藥
309	飼 料		LY 2700	7		
447	孵 化 業		RX 0600	19		畜産法에 依하여 登錄된 孵化業者가 營爲하는 境遇는 際外한다.
450	家禽 其他 動物訓練業		RX 0900	22		

1978 年 所得稅書面決定對象者의 申告基準

1. 適用對象者

가. 不動產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그 總收入金額이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金額을 超過 하는 者.

- (1) 當該年度의 直前年度의 不動產所得에 對한 總收入金額 500 萬원
- (2) 當該年度의 直前年度의 事業所得에 對한 總收入金額이 2,000 萬원 但, 運輸保管 및 通信業中 保管業, 서어비스業中 代理, 仲介, 委託販賣, 運送周施 및 都給의 事業은 500 萬원.
- (3) 不動產所得 및 (2) 號의 前段된 事業된 事業과 但書의 規定에 依한 事業을 兼營하는 境遇 에 는 所得稅法施行令 第 168 條 1 項 3 號의 金額

나. 申告基準率

- (2) 當該年度의 不動產所得에 對한 總收入金額이 直前年度 對比 別表 申告收入金額
- (1) 當該年度의 不動產所得, 事業所得에 對한 總收入金額이 直前年度 對比 別表 申告收入金額基準率以上 伸張한 者,
- (2) 申告所得金額이 所得標準率 對比 다음 率 以上인 業事者.

區 分	人口 10 萬以上의 市	其 他 地 域
78 年度 申告所得金額 基準率	80%	75%

※ 適用方法

- ① 申告所得金額基準 = 申告所得 ÷ (總收入金額 × 所得標準率)
- ② 前項에서 適用할 78 年度 所得標準率은 基本率에 差等率(낮은率, 높은率)을 加減한 것을 말함.

2. 適用除外者

- 가. 附加價値稅 課稅標準에 關한 更正決定者
- 나. 稅務調査時(査察包含) 偽裝所得者로 摘發된 者

3. 其 他

- 가. 本表에서 地域基準은 事業場(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所在地로 한다.
- 나. 共同事業者의 경우 申告基準 適用은 事業場 單位로 한다.

區 分	市 名
서 울 · 부 산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人口 50 萬以上의 市 (4 個市)	仁川市, 大田市, 光州市, 大邱市
人口 10 萬以上의 市 (22 個市)	全州市, 馬山市, 水源市, 城南市, 清州市, 木浦市, 蔚山市, 群山市, 晋州市, 安養市, 議政府市, 富川市, 原州市, 春川市, 忠州市, 麗水市, 順川市, 裡里市, 清州市, 浦項市, 慶州市, 鎭海市

〈 申 告 基 率 表 〉

業 態	區 分	所得標準率 一連番號	申告所得金額基準率					
			人口10萬 以上市	其他地域	서 울 부 산 %	人口 50 萬以上市 %	人口 10 萬以上市 %	其他地域 %
			10~13	75%	121	120	119	118

1978年 所得稅 自動賦課率

1. 適用對象者

가. 不動產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그 總收入 金額이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金額以下인 者.

1) 當該年度의 直前年度의 不動產所得에 對한 總收入金額 500萬원

2) 當該年度의 直前年度의 事業所得에 對한 總收入 金額이 2,000萬원

但, 運輸保管 및 通信業中 保管業, 서 어비스業中 代理, 仲介, 委託販賣, 運送周施 및 都給의 事業은 500萬원

3) 不動產所得 및 2) 號의 前段에 揭記된 業事과 但書의 規定에 依한 事業을 兼營하는 경우에 는 所得稅法 施行令 第 164條 1項 3號의 金額

나. 當該 課稅期間 終了日부터 遡及하여 2年間 正常的인 業事을 繼續 營爲한 者.

2. 適用除外者

가. 總收入 金額이 直前年度對比 自動賦課率의 120%以上 伸張한 者

例: 不動產 所得 134%(自動賦課率)×120%=160.8%

나. 附加價値稅 課稅標準에 關한 更正決定者

다. 無資料 財貸取扱者로 摘發된 者

3. 其 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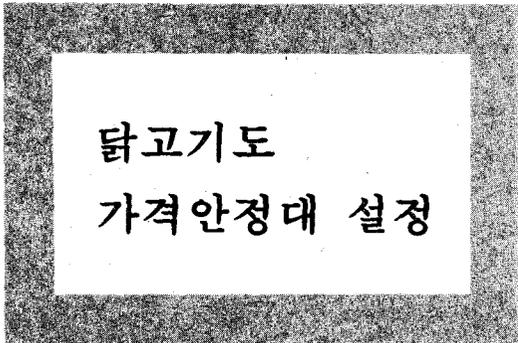
가. 本表에서의 地域基準은 事業場(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所在地로 한다

나. 共同事業者의 경우 自動賦課率 適用은 事業場 單位로 한다.

서 울 · 釜 山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人口50萬以上의市 (4個市)	仁川市, 大田市, 光州市, 大邱市
人口10萬以上의市 (22個市)	全州市, 馬山市, 水原市, 城南市, 清州市, 木浦市, 群山市, 蔚山市 晋州市, 安養市, 議政府市, 原州市, 春川市, 忠州市, 富川市, 麗水市, 順川市, 裡里市, 清州市, 浦川市, 慶州市, 鎭海市

〈自動賦課率表〉

業 態 區 分	所得標準率 一連番地	自 動 賦 課 率			
		서울을 부 산 % 人口 50 萬以上市 %	人口 10 萬以上市 %	其 他 地 域 %	
畜 産 業	10~13	127	126	125	124



닭고기도
가격안정대 설정

농수산부는 4월 20일 생산자에게는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소비자 가격도 안정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같이 보호하기 위하여 18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 대를 설정하였는데 이중에 닭고기도 포함 되었다.

닭고기의 경우 1kg에 상한가격은 1200원이 고 하한가격은 900원으로 결정 되었는데 이 하한 가격은 생산비와 적정이윤이 보장된 것이며 78년 연말 시중가격보다. 높게 책정 된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농수산부는 가격안정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시중 도매 가격이 하한 가격에 접근하거나 하한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별도 수매가격을 정하여 주산지들 중심으로 수매하고 상한가격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비축물량을 무제한 방출

한다는 것이다.

이번 농수산부의 가격 안정대 설정이 일간지에 크게 보도 되므로서 일반 양계업자가 보기에 따라서는 무한정 생산만 하면 정부가 소비를 책임져 주는것으로 착각할수도 있다. 특히 가격이 안정 되므로써 이제 양계산업이 안정될것으로 조급하게 생각할수도 있으나 양계업자의 자율적인 생산조절 없이 어느나라도 안정된 양계를 누리지 못함을 보아왔다.

18개 농산물 가격 안정대

(단위=원)

품 목	단 위	가격안정대		상소비축 무 (단위)
		상한가격	하한 가격	
마늘	집	6,000	3,000	5,000
양파	3.75kg	900	300	5,000
참깨	60"	110,000	90,000	5,000
낙화생	75"	85,000	70,000	2,000
콩	75"	30,000	24,000	30,000
팥	83.3"	60,000	45,000	
쇠고기(合成)	600g	2,300	2,100	11,000
(韓牛)	"	((2,600)	((2,250)	
돼지고기	"	1,290	1,120	4,000
닭고기	kg	1,200	900	2,000
조기	"	1,220	800	3,000
갈치	"	450	300	10,000
고등어	"	145	130	10,000
생명태	"	200	160	20,000
건오징어	"	840	600	3,000
명태	캐	2,900	2,500	600
진오징어	貫(3.75kg)	22,600	18,300	100
진멸치	3kg	6,750	5,200	500
김	束	3,600	2,000	500千束

작년에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안정대 설정때 부풀었던 기대는 그후 기업목장과 양돈장의 불경기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것을 우리는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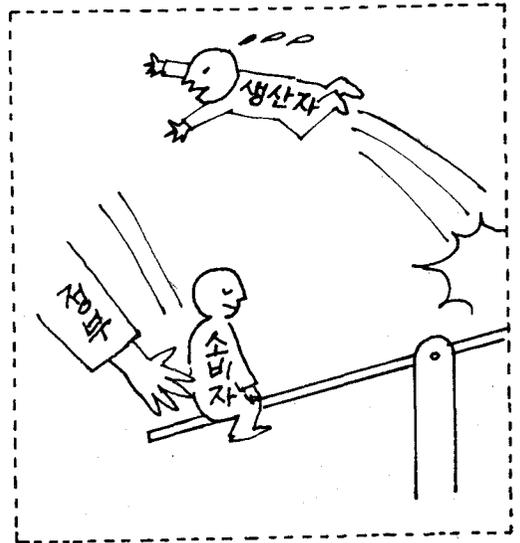
양계업자가 뭉쳐 스스로 생산조절을 하는 길 외에는 생산비를 보장받을 길은 아무곳에도 없다.

닭고기와 계란 가격도 특별관리

정부는 4월16일 연탄, 교통요금등 대폭 물가를 현실화 하면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하여 앞으로 서민가계 보호와 4,16선으로 물가를 안정 시키기 위하여 25개 생활 필수품의 가격을 특별관리 한다는 내용의 금년도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 하였다. 이계획에 따르면 쌀등 25개 기본 생활필수품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최우선적으로 가격안정을 기해 서민가계를 보호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정된 25개 특별관리 대상품목은 대부분이 농수산물로 쇠고기 돼지고기 분유 명태 고등어등 양계산물 가격에 직접 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과 쌀 콩 밀 가루 고추 옥수수 마늘 참깨 김등 13개 식료품과 연탄등 공산 품으로 되어 있다.

또 정부는 수급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50개 수급점점 대상품목을 선정 하였는데 이중 농산물 19개 품목과 수산물 10개 품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농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참깨 콩 무우 배추 양파 마늘 고추 낙화생 배 사과 감자 고구마 감귤 쌀 보리쌀
수산물: 조기 갈치 고등어 오징어 명태
공치 건오징어 건멸치 북어 김, 등이다.

이번 특별관리품목 선정을 하게된 목적이 서민 가계보호에 있고 가격이 오르는 것을 수입으로 (관세도 필요에 따라 영세율로함) 나도 막겠다는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비장한 결심으로 이루어 졌다는데 주목을 하여야 될 것 같다.

과거의 물가정책이 그러하였듯이 특히 축산물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생산자가 희생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아왔다.

이번 조치이후 농수산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이외에 닭고기도 가격안정대를 설정 하였으나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얼마나, 생산자를 보호 할것인지는 의문이다. 작년 연말부터 불황에 허덕이는 우리 업체에 충분한 생산비의 보장없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인상만을 억제 할경우 쇠고기와 같이 수입에 계속 의존 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